

#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45,701,373	19,371,041
일반회계	587,217,968	17,616,539
특별회계	58,483,405	1,754,502
공기업특별회계	40,839,473	1,225,184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2,654,897	679,647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8,184,576	545,537
기타특별회계	17,643,932	529,318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573,060	17,192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085,550	62,5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400	73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92,335	38,770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1,932,018	57,961
자활기금특별회계	295,908	8,877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84,316	20,52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67,120	14,014
수질개선특별회계	10,289,225	308,67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24억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